

의안번호	제 132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11월 일 (제405회)

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노금식, 최정훈,
김성대, 오영탁, 이태훈,
임영은

1. 제정 이유

- 충청북도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로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2조)
-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»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라. 입법예고 : 2022. 10. 17. ~ 2022. 10. 27.(10일간)

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 내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도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.

제3조(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2.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3. 문화예술단체, 사회단체,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
4.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경비 지원)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

2. 협력체계 구축

3.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

4.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방법, 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·지원)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방법, 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,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·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공적이 뚜렷한 법인·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후원”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·인적 요소를 이 전·사용·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3. “문화예술후원자”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4. “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”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8조(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□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2. 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·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문화시설”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

나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

다.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

라. 「문학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

마.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

바.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·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

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“문화이용권”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·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7.>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
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